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44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 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2년 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반영으로 예 치금회수수입이 당초 41,911백만원에서 54,039백만원으로 12,128백만 원 증가함.
- 나. 지출부문은 신규사업 편성(기후테크 경연대회)으로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 강화)를 당초 38.282백만원에서 38.302백만원으로 20백만원 증액하고.
- 다. 예치금을 28,308백만원에서 40,416백만원으로 12,108백만원 증액 반영하여, 정책사업비를 38,302백만원으로, 예치금을 40,416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계획 변경내용

- 예치금회수 12,128백만원 증액
 - (당초) 41,911백만원 → (변경) 54,03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A)	변경 (B)	증 감 (B-A)	증감률 (B/A)
계	66,595	78,723	12,128	18.2%
(순수입)	(12,684)	(12,684)	-	-
예 치 금 회 수	41,911	54,039	12,128	28.9%
예 탁 금 원 금 회 수	12,000	12,000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563	4,563	-	-
이 자 수 입	2,924	2,924	-	-
기 타 수 입	4,341	4,341	_	-
전 입 금	856	856	-	-

마. 지출계획 변경내용

-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백만원 증액, 예치금 12,108백만원 증액
 - 기후테크 경연대회 20백만원 신규편성 ※ 3차 변경
 - 예치금 (당초) 28,308백만원 → (변경) 40,416백만원 ※ 3, 4차 변경

(단위: 백만원)

< 지 출 부 문 >									
7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3차 변경 (C)	4차 변경 (D)	증 감 (E=D-B)	증감률 (D/B)	
	계	66,595	66,595	66,595	66,595	78,723	12,128	18.2%	
(순	(순지출)		(26,473)	(38,287)	(38,307)	(38,307)	(20)	0.1%	
정책사업비	계	22,482	26,468	38,282	38,302	38,302	20	0.2%	
(기후변화	융자성 사업비	17,684	17,684	27,684	27,684	27,684	-	-	
대응강화)	비융자성 사업비	4,798	8,784	10,598	10,618	10,618	20	0.2%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5	5	-	1	
재무활동	예치금	44,108	40,122	28,308	28,288	40,416	12,108	42.8%	

※ 최종 의회 의결액(2차, 제319회 정례회)대비 재무활동 20% 초과(42.8%)

Ⅲ.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121억 2,8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일반예산(재무활동)**에 121억 800만원¹⁾을 반영하고, 정책사업인 **기후변화대응강화**중 신규사업(기후테크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 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4)의 **일반예산(재무활동)**보다 지출계획을 42.8%, 12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¹⁾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변경

^{- 3}차 변경('23, 7.17) : 기후변화 대응강화(2,000만원), 재무활동(△2,000만원)

^{※「}지방기금법」제11조 단서규정(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의회의결 없이 자체변경

^{- 4}차 변경(금번 변경안) : 재무활동(121억 2,800만원)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³⁾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6

⁴⁾ 의안번호 : 91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결일 : '23. 7. 5)(원안가결)

〈표 3-1〉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

		(27) - 728								1 7 7 7			
5	정 <u>추</u> 네	백사업/단위사업/ 부 사 업	6월 정례회 의 회 의 결	3	차	변	경	변	경	안	증	감	증 감 률
	"	1 1 1	(A)					(В)	(C=E	3-A)	(D=C/A)
지 출 합 계		지 출 합 계	66,595		(56,5	95	78,72			12,128		18.2
	7	기후변화대응강화	38,282		3	38,3	02	38,302		20		0.2	
	일반예산(재무활동)		28,308		2	28,2	88		40,	,416	12,	108	42.8
		보 전 지 출	28,308		2	28,2	88		40,	,416	12,	108	42.8
		여유자금 예치	28,308		2	28,2	88		40,	,416	12,	108	42.8
	7	행 정 운 영 경 비	5				5			5		0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②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10.16) 재구성

- 동 기금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잉여자금 예치 총액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어⁵⁾,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은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4년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고,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 회중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22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3회계연도 종료가 도래한 시점이 되어서야 제출하고, 의결 결과를 예단하여 다음연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전례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 p20